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8
----------	-------

제출년월일 : 2015.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과 주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고려,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급지를 변경하고 법적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 정비 및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요금 관련 민원 불편사항을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홍대주변 주차장 6개소 급지 조정

- 2급지 → 1급지 (별지 1호)

### 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조항(제2조의2) 삭제

- 주차장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미납자에 대한 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사항이 없어 마포구 조례의 주차요금 미납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법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로 폐지 필요

- 다. [별표1] 주차요금표 중 노상주차장 1일주차권(야간에 한함) 삭제
- 라.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명확화
  - 주차확인증 제출시 100분의 30을 할인 → 주차당일 확인증 제출시 주차당일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할인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7. 2. ~ 7. 22.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의견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8. 18)
-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사.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제3조제1항에 따라”를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주차장 확보율”로, “70%이하인”을 “70퍼센트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을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이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주차외”를 “주차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관리수수료”를 “위탁관리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을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6m 미만”을 “6미터 미만”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1의 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시간내”를 “운영시간 내”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관하여 이”를 “관하여는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월 정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영노외주차장은”을 “공영노외주차장에서”로, “별표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을 각각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로 한다.

제19조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을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을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외주차장 무상이용권”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21조”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 공영주차장”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2분의1”을 “2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21조”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 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 한다)”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류를구청장”을 “서류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차난해소”를 “주차난 해소”로, “각목과 같은 담장허물기등”을 “각 목과 같은 담장허물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방법시설”을 “방법시설”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절차등”을 “절차 등에”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공사”를 “주차장설치보조공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마포구”를 “구”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각각 “주차장설치보조공사”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금지 구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노외주차장 : 월 5만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주변 지역 : 신촌로·대흥로·강변북로·양화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



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 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1급지, 5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주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9.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수강 시마다 2시간 이내 면제
  -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
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2.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p> <p>-----</p> <p>----- 시행에</p> <p>-----.</p> <p>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p> <p>-----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p> <p>-----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 주차장 확보율</p> <p>----- 70퍼센트 이하인 -----</p> <p>-----.</p> <p>1.·2. (현행과 같음)</p>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③ (생략)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 8. (생략)

9.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밀집 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  
-----  
----- 해당 -----

② -----  
-----  
각 호----- 해당

----- 범위에서 -----

1. ~ 8. (현행과 같음)

9.----- 주차 외-----



있는 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  
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 구청장은 차  
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  
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 제한장  
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  
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  
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  
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  
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사전고  
지 후 해제)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  
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  
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어느 하나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 4. (생략)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  
----- 위탁관리 수수료 -----  
-----  
-----  
-----  
-----  
-----

③ -----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 -----  
-----  
-----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  
-----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주택가도로의 주차장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

② -----  
-----  
-----  
----- 그 밖에-----  
-----  
-----.

<삭 제>

제5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 6미터 미만  
-----  
----- 각 호-----  
-----.

1. ----- 해  
당 지역-----  
-----
2. -----  
-----  
-----  
----- 해당 지역-----  
-----

제5조의3(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1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  
-----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요금에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 ⑤  
(생략)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  
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  
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  
지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  
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 규모 · 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  
운영시간 내-----  
-----

----- 별표 1-----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별표 2-----.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  
-----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  
-----

② -----  
-----

----- 각 호-----  
-----  
-----  
-----  
-----  
-----  
-----  
-----  
-----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 4. (생략)

5. 기타 주의사항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제6조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

-----  
-----  
-----  
----- 그 밖에 -----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

-----  
관하여는 제6조-----.  
-- 월 정기권-----  
-----.

② -----  
-----  
해당 -----  
-----  
-----  
-----.

<삭 제>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생략)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 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  
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관  
요금은 별표1의 공영노외주차  
장의 월정기관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  
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  
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  
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  
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  
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  
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  
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

2. (현행과 같음)

③ 공영노외주차장에서 -----  
-----  
-----  
----- 별표 1의 공영노외  
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  
급지별 -----  
-----  
-----  
-----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 급지별 -----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해당-----  
-----  
-----  
-----.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  
한 부설주차장 규모) -----  
-----  
-----

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 제21조의3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  
-----  
-----  
----- 다음 날 -----

② -----  
-----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제21조의2(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  
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  
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  
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  
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의 본  
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  
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  
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  
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  
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란 -----  
-----  
-----  
----- 해당 -----  
-----  
-----.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  
란-----  
-----  
-----  
-----  
-----  
-----  
-----.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란  
-----  
-----  
-----  
-----  
-----  
-----  
-----.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  
용 산정기준) ① -----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 무상이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략)

2. 무상이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

----- 노외  
주차장무상이용권-----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

3.-----

----- 같은 법 제21조-----

----- 6개월 -----

4.----- 해당 -----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제22조(용자의 대상) 법 제21조의  
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  
별회계(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  
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  
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주  
차장특별회계”라고 한다)의  
예산 범위내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  
로 한다.

1.·2. (생략)

제23조(용자의 방법) ① 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조(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  
야 한다.

1. 용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2. (생략)

같은 법 제21조-----

----- 6개월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용자의 대상)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 이

하 “주차장특별회계”라 한

다)----- 범위에서 -----

1.·2. (현행과 같음)

제23조(용자의 방법) ① -----

----- 서류를 구청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용자금의 반환)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목적 외-----

2. (현행과 같음)

3. 용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의2(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가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다음 각목과 같은 담장허물기 등 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가.·나. (생략)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 및 방법시설(CCTV)을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의3(보조의 방법등) ① 제24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3.-----  
---- 6개월 이내-----  
-----  
-----

제24조의2(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대상) -----  
-----  
-----  
-----  
-- 범위에서 -----  
-----  
-----

1.----- 주차난 해소-----  
----- 각 목과 같은 담장허물기 등 -----  
가.·나. (현행과 같음)

2.-----  
-----  
-----  
-----  
----- 방법시  
설-----

제24조의3(보조의 방법등) ① ---  
-----  
-----

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기준·보조금액·보조조건·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호에 의한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하 “주차장설치보조공사”라 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제24조의4(보조금 또는 공사비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공사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등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  
-- 별지 제9호서식-----  
-----.

② -----

-----  
-- 절차 등에-----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보조금 또는 공사비의 반환) ① -----

--- 주차장설치보조공사-----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지  
체 없이 -----.

1. (현행과 같음)

2. -----

----- 사유 없이 -----  
-----  
-----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  
으로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  
용을 보조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  
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조금 또는 주차장설치 보  
조공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반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 또는 주  
차장설치 보조공사 시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조건에서 정  
한 이자를 합산하여 함께 반환  
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1급지	(생략)	5,000	-	-
2급지		4,000	(생략)	(생략)
3급지		3,000		
4급지		2,000		
5급지		1,000		

3. -----  
-----  
----- 구 -----  
----- 사유 없이 -----  
-----

② ----- 주차장설치보  
조공사-----  
-----  
----- 주  
차장설치보조공사 -----  
-----  
-----

제25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1급지	(현행과 같음)	<삭제>	-	-		
2급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급지					(현행과 같음)	
4급지						(현행과 같음)
5급지						

- 비고 -

1. ~ 2. 생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  
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  
·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  
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  
·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  
고 있는 대지

나. ~ 바. 생략

4. ~ 14. 생략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  
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  
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  
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비고 -

1. ~ 2. 생략

3. -----.

가. -----  
-----  
-----

1) 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주변 지역 :  
신촌로·대흥로·강변북로·양화로  
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  
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  
-----  
-----

나. ~ 바. 생략

4. ~ 14. 생략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  
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  
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  
객이 주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  
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  
출하는 경우 주차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  
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 계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예방과 주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고려한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급지 변경으로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김정현
연 락 처	02-3153-9662